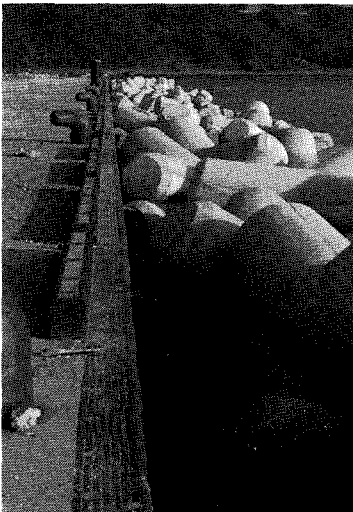


漁港의 維持관리 5

施設의 占有, 使用 用地的 利用계약



어항시설을 점용, 사용케 하는 경우

어항시설은 그 종류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개의 시설도 각각 다른 기능을 분담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 또 행정법상의 성격도 다양하다.

이러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일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가. 점용시키는 경우

점용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하는 것과 이외의 것과 두 가지가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항시설을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므로 공공기능의 보지 등에 있어서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항관리자가 관리

하는 어항시설은 공의 시설이고 더욱 공공어항시설로서 특정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점용을 행하는 자는 원칙으로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공적 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고 공작물 그 자체에 있어서도 어항의 기능상 필요하며 더욱 그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며 이용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 점용시키는 시설이 국가의 보조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경우는 그 점용이 보조금의 교부의 목적에 반한 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전술한 조건에 부가하여 어항시설별로 점용의 목적인 공작물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나, 이것은 어항시설의 구분별로 공공성, 수익성 등의 차가 있으며 여기에 따라 국가의 보조율 등이 정하여짐과 아울러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점용하가가 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작물에 의한 점용

이 인정되는 사례로서는 안벽에 있어서는 하역기계, 급수, 급유, 급빙을 위한 시설, 조명시설 등, 선양장에 있어서는 어선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시설, 방파제에 있어서는 등대, 어항시설용지에 있어서는 당해 용지의 이용계획에 따라 각종 시설 및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점용이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서는 안벽상에 본래 용지에 설치할 상옥(上屋), 안벽에서 행하여서는 안되는 작업을 위한 시설, 어항시설용지에 어항시설이 아닌 것, 토지의 이용계획에 반하는 것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더욱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은 최소한으로 함과 동시에 구조, 위치 등도 적정하게 하는 외에 당해 점용이 권리화 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점용에 있어서는 어항시설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원칙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바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나. 점용이외 이용의 경우

점용이외의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자유사용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자유사용의 경우라도 그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어항기능을 저해하는 외에 사고발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방법을 정하여 정한 규칙대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벽 등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목적,

용도에 따른 구분의 설정, 이용시간대의 조정, 장기계선의 규칙 등, 박지에 있어서는 정계박(停係泊)금지구역의 설정, 도로에 있어서는 양육의 집중시 통행규칙, 주차의 제한, 방파제에 있어서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항시설 용지의 이용계획

가. 어항시설 용지의 이용계획을 정하는 의의

어항시설 용지의 이용계획은 어항의 정비, 관리, 이용 등 장래에 있어서 어항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항시설 용지의 이용계획을 정하는 목적은

① 어항용지의 적정한 이용을 정하여 어항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고

② 국가 보조용지의 보조근거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③ 매립지의 용도를 정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나. 어항시설 용지 이용계획을 정하는 범위

어항시설 용지의 이용계획을 정하는 범위는 위의 목적으로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매립(공공시설용지라 부른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또는 어업협동조합 등이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단독사업으로 행한 매립(단독용지), 이러한 매립과 병행하여 공공의 공지(空地)성토 또는 민유지 등의 매수 등을 행하는 경우는 이것을 포함한 범위로 한다.



점용이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서는 안벽상에 본래 용지에 설치할 상옥(上屋), 안벽에서 행하여서는 안되는 작업을 위한 시설, 어항시설용지에 어항시설이 아닌 것, 토지의 이용계획에 반하는 것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더욱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은 최소한으로 함과 동시에 구조, 위치 등도 적정하게 하는 외에 당해 점용이 권리화 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주) : 공공시설 용지란, 어항관 계국고보조사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말하며 그 이용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어업생산조합 및 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를 제외)이 관리하는 어항법 제3조에 규정한 어항시설의 부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용계획 결정 또는 변경의 수속

어항시설 용지 이용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의 수속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행한다.

1) 이용계획 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

매립 등을 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이용계획협의서에 이용계획서 및 이용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수산청장관에게 제출한다.

시행자가 市町村의 경우는 都道府縣知事に 제출하고, 都道府縣知事は 당해 협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결정된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더욱 어항정비계획(수축사업)으로 채택된 어항에 대하여는 수산청의 지시에 따라 일괄 결정 또는 변경의 수속이 행하여지나 개수사업 또는 국부개량사업에 채택될 예정의 어항에 있어서는 매립착공년도의 전년도 7월말까지 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결정의 통지

수산청장에게 제출된 이용계획

은 심사의 결과 협의가 정리된 것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수산청장관으로부터 시행자(시행자가 市町村의 경우는 都道府縣知事を 경유하여)에게 통지된다.

라. 이용계획 작성상의 주의사항

1) 제1선 용지와 제1선 용지에 배치할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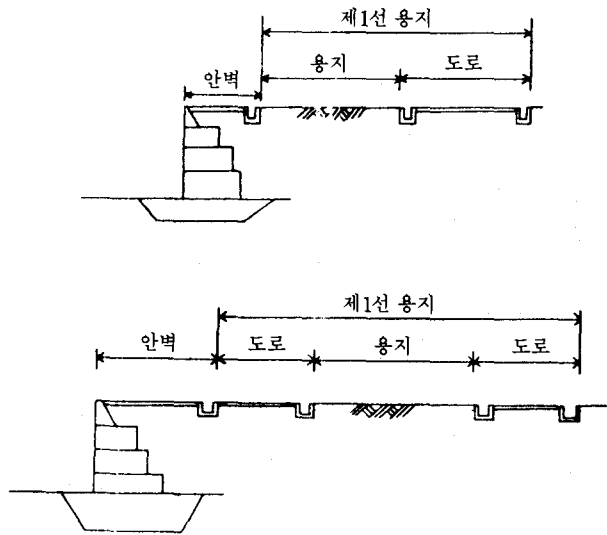
제1선 용지란, 안벽, 물양장 등의 계류시설에 접하는 직배후의 용지(계류시설과 용지의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당해 도로를 포함) 및 배후의 도로를 말하며, 통상, 이 범위를 국고보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의 용지는 공공성이 높은 계류시설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이 부분에는 하물처리장, 야적장, 어구건조장, 선양장용지, 폐유처리시설을 배치하며, 수산창고, 제빙시설, 냉동시설, 냉장

고, 가공장(천일가공장은 제외), 급유시설, 어선원 후생시설, 어선수리시설 등은 원칙으로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원칙으로 제1선 용지에 배치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합치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 ① 당해시설 용지와 안벽간에 도로를 갖고 안벽의 공공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을 것
- ② 설치할 시설이 어항의 기능상 필요하며 다수 사람에게 이용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경우
- ③ 설치되는 시설이 지방공공단체,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신용어련, 어업생산조합을 제외)의 소유·관리하는 것 일 것
- ④ 제1선 용지이외에 설치할 적당한 용지가 없어 제1선 용지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1선 용지

2) 제2선 용지

제2선 용지란, 제1선 용지로부터 안벽배후의 용지를 말한다.

제2선 용지는 장래의 정세변화에 즉응(卽應)할 수 있도록, 될수 있는 어항관리자인 지방공공단체등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2선 용지에는 어항법 제3조에서 정한 어항시설 이외의 시설배치도 가능하나 특히 공공사업으로 안벽, 호안 등을 건설한 배후의 매립지와 같이, 제2선 용지가 싼 값으로 조성된 경우는 자유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용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의 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어항시설 이외의 여러가지 어항관련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시설의 배치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유의할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상호간의 관계에 유의할 것

예를 들면 하물처리장 근처에는 하물처리 자재를 놓을 야적장을 배치한다.

또한 급유시설, 폐유처리시설은 생선식료품을 취급하는 하물처리장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② 어항전체의 이용에 배려를 할 것

어선이 입항하여 출항할 때까지의 항적선(航跡線)을 나타내고, 육상기능시설의 배치에 따라 수역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 육상교통도 같은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장래 이용에 대하여도 배려를 하여야 한다.

장래 당해 어항이 어떻게 확장

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배려하여 현재도 가장 좋도록 하며 장래에도 가장 좋은 이용계획을 생각하여야 한다.

4) 기타

이용계획은 어항의 적정한 이용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조의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은 보조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위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한 이용목적에 준수함과 아울러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산청장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어선이외의 선박 이용

근년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레저활동이 활발하여 바다도 레저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때문에 도시주변의 어항, 항만에 있어서는 요트, 모타보트, 낚시배 등의 이용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외 웨더보트, 정기선, 관광선 등의 이용도 증대되고 어선의 어항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이외의 선박에 대한 어항이용을 규제할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항은 어항법 제2조에서 어업의 근거지로 규정되어 있고 또 수산업의 발달을 도모한다는 어항법의 목적에서 볼 때 어선이외의 선박의 이용, 기타 어항 본래의 기능이외의 이용은 예정하지 않았다는 의론(議論)도 있으나 어항법의 규정, 어항행정의 실태 등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다.

가. 어항법의 규정에서 볼 때 어항본래의 목적이외의 이용도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목적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함은 안되는 것이다. 다만, 어항의 이용, 보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함은 물론이다.

나. 어항과 항만은 그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어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선의 이용이 많고, 어항으로서의 성격이 우선하는 것을 어항으로서 지정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며 어항으로 지정되는 것은 100% 어선이 이용한다는 제한이 안되어 있다. 또 어항이 종래부터의 이용상황, 발전의 과정 등에서 볼 때 어선이외의 것을 배제하는 것은 어항의 개념을 좁히고, 어항지정이 곤란하게 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다. 한편 어항수축사업 등 특정의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목적과 현저히 틀리는 이용은 보조금의 저정화 등의 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어항시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율의 보조율이 적용되어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어항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어선과 다른 선박의 이용구역을 분리,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외에도 다른 사업에 의한 타목적의 시설의 정비, 주변의 항만과의 이용조정을 피하는등에 의해서 어항의 유효한 이용, 기능의 유지를 도모토록 함이 적당하다.㉠